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9. .

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14일, 박홍배의원 등 11인

나. 회 부 일 자: 2024년 6월 1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4. 9. 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4. 9. 10.)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2차 전체회의(2024. 9. 12.)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홍배의원)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업의 특성이나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정도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절차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등 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및 협의절차를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환경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심층평가 대상으로 구분하여 공청회를 의무화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내실있는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심층평가 대상 사업 결정은 승인기관의 장 등이 주민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함.

한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신속평가 대상으로 구분하여 주민 등 의견수렴 및 평가서 작성 등 절차를 생략하되,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자 함. 신속평가 대상 결정은 환경부장관이 주민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토록하여 신속평가 대상 결정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신속평가 대상 사업 시행을 위해 수립하는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적절한 이행 관리를 위해 협의내용 이행 관리 등을 위한 준용 규정 및 벌금·과태료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5호, 제52조의2 및 제52조의3 신설,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73조, 제74

조, 제7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현행법은 도시의 개발사업,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 등을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으로 규정¹⁾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 작성 및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등을 거치도록 규정²⁾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구 분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 상	하위 행정계획(실시계획) 및 대규모 개발사업 (17개 분야 81개 개발사업) ex) 택지개발, 산업단지, 에너지개발, 항만, 도로	개발제한구역(GB) 5,000㎡이상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 10,000㎡이상 등 ex) 주택, 공장, 체육시설

※ 출처: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그 특성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평가 절차를 적용함에 따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1)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18. (생략)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보전용도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2) 참고자료3. 전략·환경·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비교

이에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평가 절차를 차등화하려는 것으로,

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 등이 환경영향평가협회의 심의를 거쳐 심층평가 대상으로 결정하고, 심층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현행 절차에 추가하여 공청회 의무화 및 환경부장관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내실있는 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②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에 경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및 환경영향평가협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신속평가 대상으로 결정하고, 신속평가 대상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현행 평가 절차 중 일부(주민 의견수렴 등 아래 표 ②~⑤)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면서 평가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의 유연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심층평가 및 신속평가 대상]

구분	심층평가	신속평가
평가대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 大)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 小)
대상결정 절차	환경영향평가협회의 심의 → 승인기관의 장 등이 결정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및 환경영향평가협 의회 심의 → 환경부장관이 결정

[제도 도입에 따른 현행 및 개정안의 평가 절차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환경영향평가	①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②평가 항목·범위 결정 ③평가서(초안) 작성 ④주민 의견수렴 ⑤평가서(본안) 작성 및 협의	(심층평가 대상) 현행 절차(①~⑤) + 공청회 의무화 + 환경부 지원 (신속평가 대상) 현행 절차 중 ②~⑤ 생략 가능 + (생략 시)환경보전방안 마련 (그 외 평가 대상) 현행 절차(①~⑤) 와 같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평가서 작성 및 협의	(신속평가 대상) 현행 절차(평가서 작성 및 협의) 생략 가능 + (생략 시)환경보전방안 마련 (그 외 평가 대상) 현행 절차(평가서 작성 및 협의)와 같음

다만,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신속평가 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대부분의 절차(평가 항목·범위 결정, 평가서 초안 작성, 평가서 관련 주민 의견수렴, 평가서 본안 작성 및 협의)가 생략되게 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이에 대해 환경부는 ① 신속평가는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환경영향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동 기준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신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엄격히 운영할 예정이며, ② 신속평가 대상 결정과정에 주민 의견수렴과 주민대표·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③ 최종적으로 환경부장관이 신속평가 대상을 결정하여 책임성이 담보되고 있다는 의견이므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신속평가 대상 기준(안)]

생활환경	자연환경(반경 500미터 이내)
1. 대기(악취)오염 물질 배출시설 입주 허용 여부 2.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 3. 특정수질오염물질 배출 4. 영향지역 내 지하수 이용 현황 5. 오염물질 배출시설 입지 현황 6. 발암성 대기오염물질 현황농도 10-5 초과 여부 7. 반경 2KM 인구밀도 393명/KM2 초과 여부 8. 대기오염물질 민감계층 이용시설 여부	1. 생태경관보호지역 2. 야생동물(특별) 보호지역 3. 수변구역 4. 녹지지역(보전녹지) 5. 천연기념물 지정지역 6. 식생보전Ⅲ등급지 면적 10만㎡ 이상 7. 습지보호지역 8. 백두대간보호지역(핵심) 9. 지하수보전구역 10.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1. 상수원 보호구역 12. 멸종위기종 서식지역 13. 습지주변관리지역 14. 주요 정맥 300m 이내 지역 15. 자연환경보전지역 16. 천연보호구역 17. 생태자연도 1등급지 18.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 출처: 환경부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생 략

6.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8. 기타사항

없 음